

■ 공급유형별 청약자격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자격	- 해당 기관에서 추천받은 자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만6세 이하 자녀) - 소득기준 130% 이하 (맞벌이 140%이하)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자 (태아 포함) - 소득기준 120%이하	- 만 65세 이상 피부양 직계존속을 만 3년 이상 계속 부양한 자 - 소득기준 120%이하	- 세대구성원 전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 - 소득기준 130%이하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순위가 아닌 자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무주택세대 요건	○	○	○	○	○	○	○
세대주/세대원 요건 방법	세대주, 세대원 구분없이 청약가능	세대주, 세대원 구분없이 청약가능	세대주, 세대원 구분없이 청약가능	세대주만 청약가능	세대주, 세대원 구분없이 청약가능	세대주, 세대원 구분없이 청약가능	세대주, 세대원 구분없이 청약가능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제외						
	6개월, 6회 이상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제외		6개월, 6회 이상		6개월, 6회 이상 ※ 저축액 600만원 이상	6개월, 6회 이상	청약통장 가입자
자산요건	X	○	○	○	○	X	X
소득요건	X	○	○	○	○	X	X
청약가능지역	충청남도, 세종자치시, 대전광역시						
우선순위	당해 100% (아산시 및 천안시 거주자 우선)						
비고	※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불가 ※ 특별공급 / 일반공급 중복신청 가능 →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					당첨시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유지	
	1세대 내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

공급유형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다자녀가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450,721	8,640,971	8,791,286	9,335,790	9,880,294	10,424,797	
노부모부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450,721	8,640,971	8,791,286	9,335,790	9,880,294	10,424,797	
생애최초	우선공급(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208,934	7,200,809	7,326,072	7,779,825	8,233,578	8,687,331	
	일반공급(3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8,071,614	9,361,052	9,523,894	10,113,773	10,703,651	11,293,530	
신혼부부	우선공급(70%)	배우자소득 無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208,934	7,200,809	7,326,072	7,779,825	8,233,578	8,687,331
		배우자소득 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450,721	8,640,971	8,791,286	9,335,790	9,880,294	10,424,797
	일반공급(30%)	배우자소득 無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8,071,614	9,361,052	9,523,894	10,113,773	10,703,651	11,293,530
		배우자소득 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8,692,508	10,081,133	10,256,501	10,891,755	11,527,009	12,162,263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 기준 : 8인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 (453,753원, 월평균 소득기준 100% 이하 기준) 추가

■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공급유형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자산보유기준	215,500천원 이하	35,570천원 이하